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

우편번호/ 주소 /전화번호 /전송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: 발 신: 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

검 사 (서명 또는 인)

제 목: **임시조치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**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요청인	성 명			
	자 격	[]피해아동등 []법정대리인 []변호사 []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[]아동보호전문기관장		
아동학대 행위자	성 명	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민등록번호	- (세)		
피해아동등	성 명			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			
요청내용				
처리결과	[] 임시조치 청구		[] 청구하지 아니함	
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내용	[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법 제19조제1항제1호)		
	[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법 제19조제1항제2호) 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 []그 밖의 장소()		
	[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법 제19조제1항제3호)		
	[]	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(법 제19조제1항제4호)		
	[]	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5호)		
	[]	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(법 제19조제1항제6호)		
	[]	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법 제19조제1항제7호)		
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